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경력자·학위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6.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① 10년 이상의 경력자, ② 박사학위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이영 장관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광운 (044-204-7706)

참고1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구 분	일반 주식회사	상장회사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벤처기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340조의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제54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법 제16조의3~6
부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 관계회사의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직원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특례 외부 전문가 특례
부여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특례 (단, 외부전문가에 대해선 10% 이내)
행사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발행) 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자기주식) 실질가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주발행)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단, 임직원에 한하여 시가 미만 & 권면액 이상 가능) 특례 (자기주식) 시가 이상
임직원 세제 혜택 (조특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특례(16조의2)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비과세 특례 적용 납부특례(16조의3) 상장 벤처기업도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과세특례(16조의2) 특례 행사이익 연간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단, 비과세 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최대 5억원 납부특례(16조의3) 특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과세특례(16조의4) 특례 적격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선택 가능 * 3년간 행사금액의 합계 5억원 이하

참고2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

- ①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②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③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전문자격을 갖춘 자

전문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2.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연구원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4.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
5.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6.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8.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9.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10.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1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④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이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 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연구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포함
2.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고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생략)</p> <p>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14. (생략)</p> <p>③ ~ ⑪ (생략)</p>	<p>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3의2.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68조제1항에 따른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u></p> <p>14. (현행과 같음)</p> <p>③ ~ ⑪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u>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u> 또는 단체로서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p>	<p>제4조(기술평가기관)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u>지식재산권등</u>----- ----- ----- -----</p>
<p>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p>	<p>제11조의3(벤처기업 <u>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u> 등) ① 법 제16조</p>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법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법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시가(이하 이 조에서 “부여 당시 시가”라 한다)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text{부여 당시 시가} - \text{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
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
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
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
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
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
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
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또는 연구소

⑤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
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
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text{(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times \text{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
--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 기술 분야 연구기관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① 법 제16조의5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

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또는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임직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그 임직원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벤처기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취소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

<신 설>

<신 설>

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정관

2.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 등) ①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제11조의4(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1조의5 ~ 제11조의9 (생략)

제11조의10(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9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8 ~ 제11조의12 (현행 제1

1조의5부터 제11조의9까지와 같음)

제11조의1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1조의12제1항-----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의11 ~ 제11조의13 (생략)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삭제
3. (생략)
- ②·③ 삭제
- ④ ~ ⑥ (생략)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의2. (생략)
4. ~ 6. 삭제

-----.

제11조의14 ~ 제11조의16 (현행 제11조의11부터 제11조의13까지와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

1. 법 제16조의7제3항-----

3. (현행과 같음)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

-----.

1. ~ 3의2. (현행과 같음)

6의2. 제11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
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
일

6의3. 제11조의7에 따른 집적지역
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
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9에 따른 벤처기업집
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6의2. 제11조의9-----

-

6의3. 제11조의10-----

7. 제11조의12-----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